#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소영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2460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5월 27일 발 의 자 :김소영, 황규복 의원(2명) 찬 성 자 :고병국, 김창원, 김춘례, 김태호, 김화숙, 노승재, 박기재, 안광석, 오한아, 유 용, 이광호, 이병도, 이종환, 이호대, 최영주, 한기영, 홍성룡 의원(17 명)

## 1. 제안이유

○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의 내용 및 정책을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에 일부 반영하여, 스마트도시 정책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5조의 내용을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반영함.
- 나.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6조제1 호 및 제2호의 내용을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 제 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반영함.

다. 「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」제10조(위 탁)를 「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」제20조제3항 및 제4 항에 반영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#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 중 "전자정부 기본계획"을 "전자정부기본계획"으로 한다.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2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3.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

- 4.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 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혉 했 개 정 아 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• ② (현행 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・② (생 략) 과 같음)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, 「지능정보 화 기본법 1 제6조에 따른 지능정 보사회 종합계획과 「전자정부 법」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 -----전자정부기본 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제19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제19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① (현행과 같음) (생 략) ②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 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6조제 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 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<신 설> 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 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제5조 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

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0조(정보격차 해소) ①(생 략)

-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수 있다.
- 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3. • 4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 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제20조(정보격차 해소) ①(현행과 같음)
  - (2) -----

---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달
- 4.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
- 5. · 6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 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

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

문서번호

20210526000000002

# 미첨부사유서(1호)

요 청 인 : 김소영 의원 담당 : 조도형 과장

이정수 팀장 백소영 주무관

접 수 일: 2021.05.26.

회 신 일 : 2021. 05. 26. 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- 1. 비용발생 요인
- 2. 미첨부 근거 규정
- 3. 미첨부 사유
- 4. 작성자

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(정보격차 해소)제2항 제3호, 제4호가 신설됨에 따라 비용 발생
  - ※ 같은 조례안 제19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제2항, 제20조(정보격차 해소) 제2항제3호의 기술상담은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, 서울디지털재단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에서 제외(붙임 참고)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

#### 3. 미첚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- 나. 추계결과 = 428,000천원
  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28,000천원으로 연평균 85,600천원임
  - 추계의 전제
    -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 비용은 서울시 유사사업(타 실국) 참조하여 연간 25,000천원 비용 산출
    - ※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(中 교육 모니터링) 29,668천원 아동친화도시 추진(中 아동권리 모니터링 추진단 운영) 24,000천원
    -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비용은 서울시 인권 담당관의 유사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
    - ※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(中 인권강사 양성) 60,600천원
    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  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 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428,000천원
  - 총비용 = 모니터링 운영 비용 + 인력 양성 비용
    - = 125,000천원 + 303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합 계
세입	_	-	-	-	-	-	_
	소계(a)	-	_	-	-	-	-
세출	모니터링 운영 비용 (제20조제2항제3호)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	인력 양성 비용 (제20조제2항제4호)	60,600	60,600	60,600	60,600	60,600	303,000
	소계(b)	85,600	85,600	85,600	85,600	85,600	428,000
총비용(b-a)		85,600	85,600	85,600	85,600	85,600	428,000

- 1) 모니터링 운영 비용 =  $\sum_{i=1}^{5} ($ 연간모니터링운영비용)i
 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  - 연간 비용 = 25,000천원
  - ※ 서울시 유사사업(타 실국) 참조하여 연간 25,000천원 비용 산출
- 2) 인력 양성 비용 =  $\sum_{i=1}^{5} ($ 연간인력양성비용)i
  - i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~2025년)
  - 연간 비용 = 60,600천원
  - ※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 교육 사업 중 인권강사 양성 비용 (60,600천원) 준용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® 02-2180-7954

e-mail: thdud36@seoul.go.kr